

표백제·중금속 파동, 한약재 규격화 촉진

시중에서 유통중인 한약재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와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이후 한의약계는 말 그대로 속대밭이 됐다.

IMF체제로 접어든 지난해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매출이 최근들어 전년 동기대비 70%이상 줄어 들었다.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업계로선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없는 악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 일부 단체는 식약청이 발표한 「한약재 문제」를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부 유통업자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관련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업계가 이처럼 「니탓」, 「네탓」하며 다투는 중에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시행중인 한약재규격화 정책만이 불량 한약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검사 강화등을 통해 한약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의 검사 결과와 관련업계의 반응, 그리고 복지부의 향후 한약재 관리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 식약청의 검사결과 발표

식약청은 지난 4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한약재판매업소 밀집지역인 서울 경동시장 및 대구 약령시 등 5개 도시에 소재한 한약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인 한약재 17종 5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건강 등 6종 28개 품목에서 표백제가, 사삼 등 3종 6개 품목에서 중금속이 기준초과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길경, 백작약 등 6종 28

<따로 중금속 기준이 정하여진 품목 예>

품 목	총중금속	Pb	As	근 거	비 고
용골	20	-	10	KP	수은0.1
젤라틴	50	-	1	KP	수은0.1
정제젤라틴	20	-	1	KP	
유우칼리유	40	-	-	KP	
오렌지유	40	-	-	KP	
계피유	40	-	-	KP	
감초조엑스	100	-	-	KP	
백반	20	-	3.3	생규	
Acacia	40	10	3	생규	
Anise oil	40	-	-	USP,NF	
Cinnamon oil	40	-	-	USP,NF	

- 허용기준 : 중금속 30ppm이하 (총중금속으로서)
- 시험방법 :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중 중금속시험법 (비색시험법) 제3법

개 품목에선 검출되면 안되는 표백제가 17~1034ppm까지 검출됐고, 사삼 등 3종 6개 품목에서는 기준치 30ppm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청은 앞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에 표백제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업계에 사전고지 했는데도 많은 업소가 이를 가볍게 여기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고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식약청 발표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가 자칫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와 공동명의로 일간신문에 낸 광고에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은 최고의 연구기관 검사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의협은 이 광고에서 95년부터 농민과 직 거래를 통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1등급 한약 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일부 약덕 한약 유통업자의 농간에 국민과 농민 그리고 한의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한약유통업계, 감독기관인 복지부와 식약청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 한약유통업계 반응

한약협회와 한약도매협회 등 한약관련 단체들은 한약재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에 『우선 업계 전체가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함께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한의협 대응에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도협은 한의협이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한의원에서 1등급 한약재만 사용한다』 『일부 약덕한약유통업자 농간에 국민과 농민, 한의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럼 한의사만 깨끗하고 유통업소는 약덕 업자라는 말이나』고 분개하고 있다.

한도협은 『한약과 관련된 모든 직능이 이번 사건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우리만 깨끗하다는 식의 한의협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도협은 또 한의협과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공동명의 광고 문구 중 일부를 문제삼고 농협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농협측으로부터 『광고문건이 당초 한의협이 동의를 구했던 원본과 다르게 일부내용이 추가됐다』는 대답을 듣고 한의협을 명에 훼손혐의로 고발하려 했으나 한의협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었다.

하지만 한도협 회원들은 『한의사들이 농협과 직거래한 한약재가 25~30개 품목에 불과

하고 물량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대다수인 나머지 품목은 어디에서 매입해 사용했느냐』고 지적하고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한약재제조업소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제조업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동한약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시행을 앞두고 제조대상인 69개 품목에 대한 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제조업소 공동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정책을 불신하는 제조업계의 적극 호응을 받지 못했다. 조합은 10여곳의 업소만 검사를 희망해 왔으나, 이번 식약청 검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전체 제조업소가 생산하는 한약재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품질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방침

지난 8월6일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으로 개정 고시한 복지부는 한약재 규격화를 위해 수년간 힘써온 이유를 이번 사건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는 재래식 유통구조에선 한약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이 줄더라도 규격화는 국민과 업계 모두를 위해 꼭 정착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재에서 표백제와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한약재에 대한 이화학적 검사의 강화 필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규격한약재 모두에 대해 중금속과 농약잔류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규격한약재에 반대해 온 일부 단체에 한해서도 「당위성」을 역설하며 규격화 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의약신문. 1998.9.10>